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3호 2018. 10. 5(금)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430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431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남원시 조례 제1432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남원시 조례 제1433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남원시 조례 제1434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남원시 조례 제1435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16
- 남원시 조례 제1436호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19

훈령

- 남원시 훈령 제390호 남원시 지방시책 오보에 관한 해명절차 규정 폐지규정 -----22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3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8-1626호 도로공고(변경) -----30
- 남원시 공고 제2018-1627호 보절 내항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31
- 남원시 공고 제2018-1638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36
- 남원시 공고 제2018-1644호 도로지정공고 -----49
- 남원시 공고 제2018-1645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 남원시 공고 제2018-1651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0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⑯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⑮ (생략) <u><신 설></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⑮ (현행과 같음) <u>⑯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1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는 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2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3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2/100”을 “3/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4 호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기타 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를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다음날까지”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로 한다.

제9조 중 “허위사실에 의하여”를 “허위사실로”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2.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4. 일반진단서	1통	500원	
5.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6.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7.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8.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징수
9. 사망진단서	1통	500원	
10.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통	500원	
11.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12. 제증명 1통 초과 추가발급	1통	100원	당일 발급 시에 한함.
13. 운전면허적성검사	1통	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u>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진료비 등) ① (생 략) ②진료수가는 「<u>국민건강보험법</u>」의 <u>규정에 의한</u>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p> <p>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국민건강보험법</u>」 등 다른 법령에 <u>의한</u>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p> <p>제5조(기타 수가) ① (생 략)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약품최근 구입가에 「<u>국민건강보험법</u>」에 <u>의거</u>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u>국민건강증진법</u>」 제30조의 <u>규정에 의한 기초체력측정 수수료</u></p>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25조 및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15조에 <u>따라</u> <u>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 필요한--</u> -----.</p> <p>제2조(진료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에 따른</u> -----.</p> <p>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의료급여법</u>」 ----- - <u>따른</u> -----.</p> <p>제5조(<u>그 밖의</u> 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라</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각종 검사)등을 요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1.·2. (생략)
- 3.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 4.·5. (생략)
- 6.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진료

제6조(건강진단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

-----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제7조(진료비·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

- 1.·2. (현행과 같음)
- 3. 감염병 -----
- 4.·5. (현행과 같음)
- 6. -----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
담금

7. (생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
종행사시 의료지원 다만, 응
급투약에 한한다.

9. (생략)

10. 「국민건강증진법」 제3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의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제8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
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
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그 밖
의 -----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징수 및 납부) -----

----- 보건소 및 보건지
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

제9조(추징) 허위사실로 -----
----- 사람에게는--
-----.

제10조(시행규칙) -----
필요한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5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조례 제 1436 호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완화의료)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방시책 오보에 관한 해명절차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0월 05일

남원시 훈령 제 390 호

남원시 지방시책 오보에 관한 해명절차 규정 폐지규정

남원시 지방시책 오보에 관한 해명절차 규정 폐지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18-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10월 5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도로	대로	3- 202	인월면 서무리 645-4 ~ 인월면 서무리 69-3	L=920m B=25m	2018. 8 2020. 12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리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인월 서무	646-1	646-1 1	답	116	18	인월면	양용택				
2	"	647-1	647-4	답	2,072	183	인월면	양용택				
3	"	521-1	521-4	답	3,203	161		남원시				
				선하지		76						
4	"	515	515-3	답	2,567	207		남원시				
5	"	505-7	505-1 1	대	197	39		남원시				
6		505-8	505-8	도로 (대)	48	48						
7		506-3	506-6	잡종지	545	105						
8	"	506-4	506-4	답	202	202		남원시				
9	"	507-1	507-6	답	2,079	175		남원시				
10	"	510-1	510-8	답	420	150		남원시				
11		509-1	509-4	답	4,109	201						
12			509-5	답		9						
13	"	467-1	467-1 7	답	150	97	인월면	강인홍				
14	"	479	479-1	답	2,291	3		남원시				
15	"	477-1	477-4	답	1,848	51		남원시				
16	"	478-1	478-6	답	1,406	161		남원시				
17	"	471-1	471-7	답	572	170		남원시				
18	"	475-1	475-6	답	900	160		남원시				
19	"	476	476-1	답	1,491	10		남원시				
20	"	474-1	474-5	답	574	238		남원시				
21	"	58	58-2	답	691	146		남원시				
22	"	59-1	59-1	답	9	9		남원시				
23	인월	67	67-2	답	402	235		남원시				

□ 물 건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주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인월 서무	505-7 (505-11)	담장	보수비포함	1	식						
			그늘막	등나무	1	식						
			간판		2	식						
			바닥포장		1	식						
			화단		2	식						
			목련나무		1	주						
			사철나무		3	주						
			벌통나무		2	주						
			단풍나무		1	주						
			참빛나무		3	주						
			소나무		2	주						
			호두나무		1	주						
			철쭉		5	주						
			능수화		2	주						
			측백나무		1	주						
			백일홍		1	주						
			명자나무		4	주						
			자귀나무		1	주						
			조경석		2	식						
			수도간		1	식						
소계			20건				인월면	이종술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주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2	인월 서우	506-3 (506-6)	화단		1	식						
			향나무		1	주						
			소나무		6	주						
			참빛나무		1	주						
			철쭉		6	주						
			사철나무		1	주						
			능수화		2	주						
			벚꽃나무		1	주						
			명자나무		2	주						
			남천		1	주						
			회양목		4	주						
			수국		1	주						
			자귀나무		2	주						
			조팝나무		1	속						
			병꽃나무		1	주						
			장미		2	주						
			이팝나무		1	주						
			헨스	보수비포함	1	식						
			바닥포장		1	식						
			가로등		1	식						
소계			20건				인월면	이종술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주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명세	
3	인월 서무	506-4	하우스 지지대			식						
			꽃나무			주						
			다래			주						
			울타리 (보수비포함)	강판, 철재		식						
			창고			식						
소계			5건				인월면	김권호				
4	인월 서무	67-1	울타리 (무궁화)	강판		식						
			화단			식						
			소나무			주						
			측백나무			주						
			단풍나무			주						
			철쭉			주						
			광광나무			주						
			주목			주						
			회양목			주						
			사철나무			주						
			앵두나무			주						
			무궁화			주						
			느티나무			주						
			목단			주						
			파카			주						
			조경석			식						
소계			16건				인월면	민병만				
5	인월 서무	66-4	화단		1	식						
			철쭉		4	주						
			목단		1	주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626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8-1 6	남원시 왕정동 155-13	박*희	2018-건축과- 신축허가-73	32.3	5.6	180	남 원 시 왕 정 동 155-1	남 원 시 왕 정 동 155-10	분 할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남원시 공고 제2018 - 1627호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인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보상 계획면적	사업 시행자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L=1.04km B=7.0m	46필지 8203.6㎡	남원시장

2. 보상방법 : 현금 일시불 지급(계좌입금)

3. 보상시기 : 2018. 12월 ~ 2019. 2월

4.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보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확정통지
→ 협의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5. 열람기간 : 2018. 10. 12. ~ 2018. 10. 28.(16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 ☎ 063)620-6535, 해당면사무소

7. 열람내용 :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게재생략)

8.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토 지 조 서

공사명 :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순번	토 지 소 재 지			모면지	지목	면적	편입면지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동리	동리						주 소	성 명	
1	남원	보절면	황벌	269-3	전	7018.0	269-9	1159.0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가 **2	화**	
2	남원	보절면	황벌	291-3	답	774.0	291-4	191.0	남원시 보절면 외항길 **1	조*	지분 15분의 3
									순천시 신산길 **(목월동)	화**	지분 15분의 2
									남원시 봉맞1길**(향교동)	화**	지분 15분의 2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간석동)	화**	지분 15분의 2
									남원시 옥재2길 **(드림동)	화**	지분 15분의 2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간석동)	화**	지분 15분의 2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2길 **(효자동3가0)	화**	지분 15분의 2
3	남원	보절면	황벌	292	답	781.0	292-4	107.0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 7**	임**	
4	남원	보절면	황벌	293	답	52.0	293-6	19.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4**	이**	
5	남원	보절면	황벌	295-12	목	2642.0	295-13	31.0	남원시 보절면 묘산로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6	남원	보절면	황벌	315	답	2027.0	315-3	164.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소**	
7	남원	보절면	황벌	767-1	전	326.0	767-4	18.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8	남원	보절면	황벌	767-3	전	203.0	767-5	97.0	보절면 외항길 **1	화**	
9	남원	보절면	황벌	769	대	235.0	769-1	20.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노**	지분 4분의 1
									경남시 창원구 금강동11**	노**	지분 4분의 1
									서울시 동대문구 동두동779 신동@3-4**	노**	지분 4분의 1
									군산시 동흥남동 139-**	노**	지분 4분의 1

토 지 조 서

공사명 :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모번지	지목	면적	편입번지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	동리						주 소	성 명	
10	남원	보절면	황벌리	770	전	403.0	770-1	84.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노**	
11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4-3	답	1705.8	1294-5	60.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노**	
12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4-4	답	625.3	1294-6	99.9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노**	
13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5-1	답	753.4	1295-6	104.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14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5-2	답	2120.7	1295-7	258.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15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5-3	답	1101.6	1295-8	168.9	인천광역시 남구 권곡동13-11 통부@103-506	노**	
16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5-4	답	929.4	1295-9	118.5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10**-7	박**	
17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5-5	답	2370.2	1295-10	633.0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10**-7	박**	
18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7-1	답	839.2	1297-4	283.6	황원시 보절동 4-1 현대@201-13**	노**	
19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7-2	답	829.6	1297-5	164.4	황원시 보절동 4-1 현대@201-13**	노**	
20	남원	보절면	황벌리	1299-1	답	1983.6	1299-4	571.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1	소**	
21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1-1	답	1977.5	1301-3	313.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김**	
22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1-1	답	1977.5	1301-4	83.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김**	
23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4-1	답	2964.7	1304-5	7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75-**	김**	
24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5-1	답	4832.9	1305-13	337.3	남원시 보절면 내황길 1**-1	노**	
25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5-4	답	2088.4	1305-14	168.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이**	
26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5-5	답	2467.5	1305-15	162.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이**	
27	남원	보절면	황벌리	1305-6	답	4756.8	1305-16	318.3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토 지 조 서

공사명 :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모번지	지목	면적	편입번지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동리							주 소	성 명	
28	남원	보절	황벌	1305-7	답	3309.2	1305-17	180.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1	최**	
29	남원	보절	황벌	1305-8	답	996.7	1305-18	55.8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김**	
30	남원	보절	황벌	1305-9	답	1051.3	1305-19	61.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강화노씨명사공과****별출중	
31	남원	보절	황벌	1305-10	답	2692.4	1305-20	116.5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소**	지분3분의 1
									전주시 우아동3가 4**-1	소**	지분3분의 1
									대전시 중구 문화동466-***	소**	지분3분의 1
32	남원	보절	황벌	1306-5	답	1459.9	1306-10	13.6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4**	노**	
33	남원	보절	황벌	1306-6	답	2356.2	1306-11	57.9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6**	송**	
34	남원	보절	황벌	1306-7	답	490.1	1306-12	14.7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5**-2	이**	
35	남원	보절	황벌	1306-8	답	2402.7	1306-13	69.2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 도시개발@211-3**	이**	
36	남원	보절	황벌	1306-9	답	1917.2	1306-14	73.1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6**	송**	
37	남원	보절	황벌	1307	답	2812.8	1307-3	103.1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40,201동120**호	박**	
38	남원	보절	황벌	산21-1	임	12026.0	산21-3	310.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1	전주최씨****노 황출중	
39	남원	보절	황벌	산22	임	9917.0	산22-1	77.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1	전주최씨****노 황출중	
40	남원	보절	황벌	293-5	답	21.0	293-5	21.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4**	이**	
41	남원	보절	황벌	269-2	도	89.0	269-2	89.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합유자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	노**	합유자
42	남원	보절	황벌	269-6	임	583.0	269-6	583.0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가 ***-2	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모번지	지목	면적	편입번지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동리							주 소	성 명	
43	남원	보절	황벌	766-3	전	36.0	766-3	36.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소**	
44	남원	보절	황벌	766-1	전	17.0	766-1	17.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7**	소**	
45	남원	보절	황벌	766-2	도	298.0	766-2	298.0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이**	사정
46	남원	보절	황벌	771-2	도	218.0	771-2	218.0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8**-1	노**	
소계								8,203.6			

물 건 조 서

공사명 :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 명	상황 및 구조 (m)	편입 수량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보절	황말	1295-2 답	관정	농업용	1식			
2	보절	황말	767-1	향나무	H=2~2.5m	3주			
3	보절	황말	767-3	분묘		2기			
				비석		1식			
4	보절	황말	269-1	분묘		2기			
				향나무	H=0.5~1m	7주			
5	보절	황말	1306-8	관정		1식			
6	보절	황말	1297-1	관정		1식			

남원시공고 제2018 -1638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4조)

나. 목욕권 사용, 목욕장 협약체결,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10. 4. ~ 2018. 10. 2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02meteor@korea.kr), 전화(063-620-6194),
FAX(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위생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4조)
- 나. 목욕권 사용, 목욕장 협약체결,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4. ~ 2018. 10. 24.(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②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 지역 노인은 제외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목욕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2. 목욕권은 1명 분기별 3매, 1매당 4,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목욕권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면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통장 등을 통하여 목욕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목욕권 사용) ①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 뒷면에 별도 표시한 기한까지로 한다.

③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등)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20 년도 No.  남원시

노인 목욕권
(원권)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남원!

60mm×90mm(사이즈 변동될 수 있음)

(뒷면)

유의사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남원시 목욕장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권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업소명			대표자		
사업명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p>「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p>※ 붙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목욕권 및 목욕권 제작비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420,807천원 [※ 2019년도 전체 예산]
 - 목욕권 지원 : 416,640천원
 - 목욕권 제작비 : 4,167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비용	420,807	420,807	420,807	420,807	420,807	420,807
목욕권 지원	416,640	416,640	416,640	416,640	416,640	416,640
목욕권 제작비	4,167	4,167	4,167	4,167	4,167	4,167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 남원시 공고 제 2018 - 1644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8-2 2	남원시 신정동 산52-4(임)	김*연	2018-건축과- 건축신고-323	75	6	455	남 원 시 신 정 동 산 52-4	455	김*연

남원시 공고 제2018 - 1645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제한 위탁조건 조항 삭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p910101@korea.kr),

전화(063-620-6136/6138), FAX(063-620-6705)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민 원 과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 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제한 위탁조건 조항 삭제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 . ~ 2018. .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조달단가”를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로 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중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주사무소가 시 관내 및 전라

북도에 소재하며 입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생략)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고 제2018-1651호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안부 기획정비과제로 시장의 면책 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규정 중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1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jiman979@korea.kr), 전화(063-620-6217),

FAX(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안부 기획정비과제로 시장의 면책 규정 및 이
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규정 중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
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1항,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국가배상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 ~ 2018. 1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손해배상) ① <u>시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은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② (생 략)</p> <p>③ <u>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u></p>	<p>제22조(손해배상) ① <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